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7월 13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7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6. 7. 27.)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공은정 여성가족과장)

가. 동의를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에 대한 협약체결 후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신규 위탁 신청자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운영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3. 위탁계획

- 위탁구분 : 신규위탁
- 시설현황

위탁대상	위 치	세대수	예상정원	연면적	비고
(가칭) 시립동화아이위시어린이집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28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522	40명	405.93㎡	

○ 위탁사무

위탁사무	내 용	비 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밖의 연장형 보육) -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아동,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복무, 후생 등에 관한 사항 - 포항시 특수보육시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업 비 : 110,000천 원/개소

- 리모델링 : 100,000천 원
- 기자재비 : 10,000천 원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심사방법

- 1차 서류 : 신규위탁 신청서에 의거한 정량평가
- 2차 PPT 소견발표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전문성 및 운영능력 평가)

○ 심사내용 :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수탁자 선정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 선정(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항목별 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4. 위탁체의 공신력	10
5. 재정능력	5
합 계	100

5.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충무새마을과 - 6587(2025. 2. 18.))

의안 번호	심의대상	심의 결과	비 고
2025-32호	(가칭) 시립동화아이위시어린이집	적정	심의위원 전원 찬성

○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 되므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운영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법령·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공교육 증대 국가정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도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6. 향후 일정

- 2026. 8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9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결정
- 2026. 10월 ~ 11월 : 사업비 교부, 리모델링 등 개원 준비
- 2026. 12월 : 개원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시립동화아이위시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가칭)시립동화아이위시어린이집’은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아파트에 위치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포항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고 후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본 건은 최초 민간위탁임에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이후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이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최초 민간위탁의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본 어린이집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시설로서, 어린이집 개원 지연 시 입주민의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국비 지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공익성과 시급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사전 일정관리와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9. 토론의 요지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